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 공동 실험·생산장비 사용료 징수 및 운영 규정

[제정 2011.6.15][개정 2012.3.16][개정 2013.1.17][신설 2016.04.29][신설 2017.11.06.][개정 2023.04.10]

제1조(명칭) 본 명칭은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신설 2017.11.06.><개정 2023.04.10.>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센터에서 구축한 공동실험·생산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사용료 징수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제정 2011.6.15.><신설 2017.11.06.>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사용승인을 얻어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제정 2011.6.15>

제4조(장비구분 및 정의) ①센터의 장비사용료는 진흥원 운영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6.3.17>

②“사용자”라 함은 센터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의 대표자를 말한다.<제정 2011.6.15>

③공동실험장비”라 함은 입주자의 연구 또는 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실험과 관련하여 센터 내에 설비한 장비를 말한다.<제정 2011.6.15>

④“공동생산장비”라 함은 입주자의 사업화 및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비한 파 일롯트 플랜트 등 생산과 관련하여 센터 내에 설비한 장비를 말한다.

<제정 2011.6.15>

⑤“장비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센터 내에 구축된 공동실험장비 및 공동생산장비를 사용하여 실험·분석 및 제품을 만드는데 가동되는 장비의 사용료를 말한다.<제정 2011.6.15>

⑥“센터전문요원”라 함은 사용자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실험·생산장비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센터에 소속된 인력을 말한다.

<신설 2013.1.17.>

제5조(장비의 사용신청) ①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별지1]서식의 장비사용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7.11.06.>

② 장비의 사용신청은 사용업체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7.11.06.>

③ 장비 담당자는 접수된 장비사용신청서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확인한 후 [별지2]서식의 장비사용승인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장비사용 순위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한다.<신설 2017.11.06.>

④ 모든 장비사용 관련 상담 내용은 [별지3] 서식의 장비사용상담일지에 작성한다.

<신설 2017.11.06.>

⑤ 센터장은 사용자가 5일 이상 사용은[별지4] 서식의 생산계획표를 받아 사용승인 하며, 장기간 또는 반복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장비사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연간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11.06.>

제6조(장비의 사용) ① 사용 승인한 장비는 사용신청자가 직접사용 하거나, 센터 전문요원 또는 장비운용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7.11.06.>

② 장비의 사용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11.06.>

③ 장비의 사용시간은 진흥원 직원복무 규정의 근무시간 내로 하며, 필요시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11.06.>

④ 센터장은 사용자가 19시 이후로 지연 또는 연장할 경우 [별지5] 장비사용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아 승인 후 사용 할 수 있다.<신설 2017.11.06.>

⑤ 장비사용에 관한 사용자 준수사항 등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별지 6]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사항에 따른다.<신설 2017.11.06.><개정 2023.04.10.>

⑥ 센터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장 시설물, 장비등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장비사용자에게 장비운용 안전사항 등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⑦ 장비사용자(대표자, 책임자)는 당사가 고용한 생산인력에 대하여 위생·안전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1(장비사용의 불승인) 센터장은 사용자의 장비사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7.11.06.>

1. 시설 또는 기계장비를 파손하고 멸실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비사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장비사용신청 후 3회 이상 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용자의 장비사용 후 위생관리에 미흡할 경우
5. 그 밖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원료, 성분 및 생산제품의 납품·유통처등 이용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7.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개정 2023.04.10.>

제7조(장비사용료 산정) ① 각각의 개별 장비마다 장비사용료를 산정한다.

<제정 2011.6.15.>

② 장비사용료의 산정은 진흥원 운영규정집 「입주기업 및 시설 사용규정」 제4장 장비사용 및 관리, 제21조(사용료)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6.04.29.><개정 2023.04.10.>

③모든 장비의 사용시간은 8hr/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특성에 따라 장비사용시간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제정 2011.6.15>

④사용시간의 산정 기본단위는 1시간(60분)이며, 30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1시간(60분) 단위로 올림하여 산정한다.<제정 2013.1.17.><신설 2017.11.06.>

⑤제품의 입가공, OEM, ODM 등 개별계약 생산의 경우 별도 산정한다.<신설 2023.04.10.>

제8조(장비사용료) ①장비사용료는 개정된 장비사용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별표1],[별표2]를 적용한다.<신설 2016.04.29.><개정 2023.04.10.>

②센터 장비를 사용하여 생산된 판매목적의 제품은 “식품위생법”의 의거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센터 내 품질검사 항목과 검사료는 [별표3]와 같이 산정한다.<신설 2017.11.06.><개정 2023.04.10.>

제8조의1(신규 도입장비의 사용료 산정) ①센터장은 『진흥원 운영규정집』 제21조 제1항에 의거 산정하여 징수한다.<신설 2016.04.29.>

②삭제 <2017.11.06.>

제8조의2(생산장비별 사용시간의 산정 기준) ①최초 장비사용 시작 시간은 신청한 당일에 사용자의 입실 시간으로 정한다. 다만, 센터전문요원이 직접 작업을 수행 할 경우에는 사용 장비 사전테스트 등의 작업 준비 시작 시간으로 한다.<제정 2013.1.17>

②최종 장비사용 종료 시간은 사용 장비와 가공실의 청소 및 정리정돈 완료 후 사용자 또는 센터전문요원의 퇴실시간과 사용자가 제조한 제품의 가공이 완료되는 시간 중 가장 늦게 끝나는 시간으로 정한다. 다만, 센터전문요원이 직접 작업을 수행 할 경우에는 제조한 제품의 가공이 완료되는 시간으로 한다.<제정 2013.1.17>

③센터 수산가공동에서 실 사용한 개별 생산 장비에 대한 사용시간의 적용은 장비 사용 개시일전에 신청하여 당일에 실제 사용한 전체 장비에 대해 최초 시작 시간부터 최종 종료 시간까지 동일한 사용시간을 적용한다. 다만, 공기조화기, 유틸리티 설비, 냉장실, 냉동실에 대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별표 5]과 같다.<제정 2013.1.17>

④센터 해양바이오동에서 실 사용한 개별 생산 장비에 대한 사용시간의 적용은 [별표 6]과 같다.<제정 2013.1.17>

⑤ 삭제 <2013.1.17.>

⑥사용자의 장비사용이 18시 이후로 지연 또는 연장되거나,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하여 산정한다.<신설 2017.11.06><개정 2023.04.10.>

1. 18시 이후 발생한 장비사용시간 2배 적용
2. 주말 또는 공휴일의 장비사용시간 2배 적용
3. 주말 또는 공휴일에 18시 이후 발생한 장비사용시간 4배 적용

제8조의3(생산장비별 인건비 산정시간의 기준) ①센터전문요원이 직접 장비를 운영 할 경우 최초 장비사용 시작 시간부터 최종 종료 시간까지의 인건비를 산정한다. 다만, 특수하게 운영되는 장비의 인건비 산정시간은 [별표 7]과 같다.<제정 2013.1.17>

②사용자가 직접 장비를 운영 할 경우에 사전 장비 가동 및 유틸리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최대 1일 2시간을 적용한다. 다만, 1시간 이하를 사용한 경우에는 1시간을 적용하며, 사용자가 18시 이후로 지연 또는 연장할 경우 1시간씩 산정하고,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제정 2013.1.17><개정 2023.04.10.>

③사용자의 장비사용이 18시 이후로 지연 또는 연장되거나,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하여 산정한다.<제정 2013.1.17><개정 2023.04.10.>

1. 18시 이후 발생한 인건비는 2배 적용
2. 주말 또는 공휴일의 인건비는 2배 적용
3. 주말 또는 공휴일에 18시 이후 발생한 인건비는 4배 적용

④삭제 <2013.1.17>

⑤사용자가 장비사용 개시일전까지 생산인력을 자체 조달하지 못해 센터에 생산인력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센터전문요원의 장비사용료에 산정된 인건비를 적용할 수 있다.<제정 2013.1.17><개정 2023.04.10.>

제8조의4(생산장비별 수도비 산정 기준) 생산장비 별 수도비의 산정 기준은 [별표 8]과 같다.<제정 2013.1.17>

제9조(장비사용료의 감면) 센터장은 제8조 및 제8조의1의 장비 사용료를 징수할 때 [별표 4]의 할인율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제정 2011.6.15, 2012.3.15., 2013.9.3., 2016.03.17>

제10조(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 ①센터장은 사용자가 장비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미납한 장비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공동 생산장비 사용신청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제정 2012.3.15.>

②장비사용료의 미납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미납일 적용 기준일은 장비 사용 신청일자로 한다. 다만, 장비 사용 예정일 이전에 미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사용에 제한을 할 수 있다.<제정 2013.1.17.>

③센터장은 사용자가 시설 또는 기계장비를 파손하고 멸실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신청 승인을 거부 할 수 있다.<신설 2017.11.06.>

④센터장은 사용자가 장비사용신청 후 천재지변 외 개인적인 사유로 3회 이상 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 공공질서를 위하여 사용신청 승인을 거부 할 수 있다.<신설 2017.11.06.>

- ⑤센터장은 사용자의 시설·장비·비품 사용 후 위생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신청 승인을 거부 할 수 있다.<신설 2017.11.06.>
- ⑥그 밖의 센터 공동 시설·장비의 관리,운용상 장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사용신청 승인을 거부 할 수 있다.<신설 2017.11.06.>
- ⑦[별지6]장비사용에 관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장비사용에 제한을 할 수 있다.<신설 2023.04.10.>

제11조(장비사용료 변경) ①장비사용료는 인건비, 유틸리티비, 장비유지비, 전력비 등의 합당한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변동에 관계없이 통계청 고시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경 분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제정 2011.6.15.><개정 2023.04.10.>

②장비사용료는 시설·장비의 투입된 간접비(유틸리티, 유지보수비, 시설운영비)등 실비용을 차년도에 반영하여 변경·산정할 수 있다.<신설 2023.04.10.>

제12조(장비사용료 청구) ①장비사용료의 청구는 장비사용이 끝난 날부터(검수가 필요할 경우 검수기간 포함)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신설 2023.04.10.>

②장비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따로 계약으로 납부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는 최대 4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23.04.10.>

③ 사용자는 장비사용료를 센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10.>

④ 센터는 사용자가 장비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23.04.10.>

⑤ 제4항의 연체료는 추가납부기한까지 연체일수를 계산하여 지연일수 1일에 미납금액의 500분의 1을 가산한다.<신설 2023.04.10.>

제13조(장기연체자 조치) ①센터장은 사용자가 장비사용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경우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등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04.10.>

②장기연체자의 경우에는 재단이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된 금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04.10.>

제14조(이의신청) ①센터에서 산정한 장비사용료에 대한 이의 신청은 청구일 또는 사용자가 확인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2013.1.17>

②센터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사용자에게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 처리 기간 중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한 사용자의 장비 사용 및 완제품의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정 2013.1.17.>

부 칙[2011.6.15]<개정 2023.04.10.>

(장비사용료의 제정 및 개정) 장비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센터장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시행일) 본 장비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센터장이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관련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진흥원의 규정과 상충될 경우에 진흥원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2.3.15]

이 규정은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17]

이 규정은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06]

이 규정은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4.10]

이 규정은 센터장이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접수번호					담당	팀장
장비사용신청서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실무담당자	
	대표생산제품			연락처	전화	
				F A X		
				E-mail		
장비명						
장비보유소	<input type="checkbox"/> 수산가공동 <input type="checkbox"/> 해양바이오동					
사용목적	사용목적(상세히 기재) : _____ <input type="checkbox"/> 실험제작 <input type="checkbox"/> 제품 시생산 <input type="checkbox"/> 완제품 생산(판매용)					
특기사항	원료명:_____ / 입고량:_____ / 생산수량:_____ 판매처: <input type="checkbox"/> 수출용 : _____ <input type="checkbox"/> 내수용 : _____					
장비 사용기간	사용희망일				사용완료 예정일	
장비운영 방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단전문요원운영 <input type="checkbox"/> 기업직접장비운영					
운영인력 (※직접운영인 경우만 기재함.)	성명(책임자)				성 명	
	성 명				성 명	
첨부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아래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 이행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대표자) : _____ (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margin-top: 20px;">(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 귀하</p> <p>※ 장비사용시 준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비의 사용 중이나 사용 후에 발생하는 생산품의 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사항은 장비사용업체가 책임을 진다. 2. 장비의 사용중 장비의 노후 및 자체 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장비의 손상, 고장 및 분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3. 기타 장비사용에 따른 제반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에 따른다. 4. 생산 종료 후 센터 내부규정에 의하여 생산제품의 샘플을 수거 하고자 하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장비사용승인서					승인번호
신청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번호)				
	주 소			실무담당자	
	대표생산제품		연 락 처	전 화	
				F A X	
	E-mail				
회원구분	<input type="checkbox"/> 입주기업, <input type="checkbox"/> 졸업기업, <input type="checkbox"/> 도내기업, <input type="checkbox"/> 기타				
장비명					
장비보유소	원	동	실		
사용목적					
특기사항					
장비 사용기간	사용희망일			사용완료 예정일	
장비운영 방법	<input type="checkbox"/> 재단전문요원운영 <input type="checkbox"/> 기업직접장비운영				
운영인력 (※직접운영인 경우만 기재함.)	성명(책임자)			성 명	
	성 명			성 명	
<p style="text-align: center;">사용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상기와 같이 재단의 장비 사용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재단법인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센터장</p> <p style="text-align: center;">○○○ 귀하</p> <p>※ 장비 사용 시 준수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비의 사용 중이나 사용 후에 발생하는 생산품의 질 및 오염 등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장비사용업체가 책임을 진다. 2. 장비의 사용 중 장비의 노후 및 자체 결함인 경우를 제외한 장비의 손상, 고장 및 분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3. 기타 장비사용에 따른 제반사항은 재단의 운영규정 및 운영계획에 따른다. <p>※ 기타 장비사용에 관한 문의는 ○○팀 ○○○ 연구원(tel : -)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p>					

담당	팀장	센터장	결 재
	전 결		

장비사용 상담일지

○ 상담일시 : 20 . . . (:)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피상담자	부서		직함		성함		
	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상담주제					상담자		
상담자 의견							
향후 추진사항							

일별 세부 생산 계획표

사용자명 (대표자)				업체명			
사용목적							
장비사용 신청기간	시작일	20			종료일	20	
일자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제품명 (시료명)	주요 사용장비	생산수량 또는 주원료 사용량	사용 내용 (주요 공정 등)	확인
<p>상기 내용은 「해양바이오연구센터 장비 사용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제1항에 의해 장비 사용 신청 승인 및 제한에 관한 중요한 자료이오니 신중하게 작성하여 사용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 (인)</p> <p>(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 귀하</p>							

- 장비사용에 관한 사용자 준수사항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소

- 장비사용에 관한 사용자 준수사항 -

제1조(명칭) 본 명칭은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라 한다) 해양바이오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칭한다.<신설 2017.11.06.><개정 2023.04.10.>

제2조(목적) 본 규정은 센터에서 구축한 공동실험·생산장비(이하 “장비”라 한다)의 사용료 징수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목적으로 한다.<제정 2011.6.15.><신설 2017.11.06.>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사용승인을 얻어 장비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제정 2011.6.15>

제4조(장비구분 및 정의) ① 센터의 장비사용료는 진흥원 운영규정에 준한다. <개정 2016.3.17>

② “사용자”라 함은 센터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어 장비를 사용하는 업체의 대표자를 말한다.<제정 2011.6.15>

③ “공동실험장비”라 함은 입주자의 연구 또는 실험을 지원하기 위해 실험과 관련하여 센터 내에 설비한 장비를 말한다.<제정 2011.6.15>

④ “공동생산장비”라 함은 입주자의 사업화 및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비한 파일롯 플랜트 등 생산과 관련하여 센터 내에 설비한 장비를 말한다.

<제정 2011.6.15>

⑤ “장비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센터 내에 구축된 공동실험장비 및 공동생산장비를 사용하여 실험·분석 및 제품을 만드는데 가동되는 장비의 사용료를 말한다.<제정 2011.6.15>

⑥ “센터전문요원”라 함은 사용자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실험·생산장비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센터에 소속된 인력을 말한다.

<신설 2013.1.17.>

제5조(장비의 사용신청) ①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기준으로 3일 전까지 센터장에게 [별지1]서식의 장비사용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7.11.06.>

② 장비의 사용신청은 사용업체 대표자 명의로 하여야 한다.<신설 2017.11.06.>

③ 장비 담당자는 접수된 장비사용신청서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확인한 후 [별지2]서식의 장비사용승인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장비사용 순위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한다.<신설 2017.11.06.>

④ 모든 장비사용 관련 상담 내용은 [별지3] 서식의 장비사용상담일지에 작성한다.

<신설 2017.11.06.>

⑤ 센터장은 사용자가 5일 이상 사용은[별지4] 서식의 생산계획표를 받아 사용승인 하며, 장기간 또는 반복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장비사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자로부터 연간 사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7.11.06.>

제6조(장비의 사용) ① 사용 승인한 장비는 사용신청자가 직접사용 하거나, 센터 전문요원 또는 장비운용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7.11.06.>

② 장비의 사용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11.06.>

③ 장비의 사용시간은 진흥원 직원복무 규정의 근무시간 내로 하며, 필요시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7.11.06.>

④ 센터장은 사용자가 19시 이후로 지연 또는 연장할 경우 [별지5] 장비사용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아 승인 후 사용 할 수 있다.<신설 2017.11.06.>

⑤ 장비사용에 관한 사용자 준수사항 등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별지 6]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사항에 따른다.<신설 2017.11.06.><개정 2023.04.10.>

⑥ 센터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장 시설물, 장비등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장비사용자에게 장비운용 안전사항 등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⑦ 장비사용자(대표자, 책임자)는 당사가 고용한 생산인력에 대하여 위생·안전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의1(장비사용의 불승인) 센터장은 사용자의 장비사용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17.11.06.>

1. 시설 또는 기계장비를 파손하고 멸실시킬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비사용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장비사용신청 후 3회 이상 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용자의 장비사용 후 위생관리에 미흡할 경우
5. 그 밖의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용상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원료, 성분 및 생산제품의 납품·유통처등 이용 용도가 불명확한 경우
7.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개정 2023.04.10.>

제7조(장비사용료 산정) ① 각각의 개별 장비마다 장비사용료를 산정한다.

<제정 2011.6.15.>

② 장비사용료의 산정은 진흥원 운영규정집 「입주기업 및 시설 사용규정」 제4장 장비사용 및 관리, 제21조(사용료) 제1항을 준용한다.<신설 2016.04.29.><개정 2023.04.10.>

- ③ 모든 장비의 사용시간은 8hr/일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특성에 따라 장비사용시간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제정 2011.6.15>
- ④ 사용시간의 산정 기본단위는 1시간(60분)이며, 30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는 1시간(60분) 단위로 올림하여 산정한다.<제정 2013.1.17.><신설 2017.11.06.>
- ⑤ 제품의 임가공, OEM, ODM 등 개별계약 생산의 경우 별도 산정한다.<신설 2023.04.10.>

제8조(장비사용료) ① 장비사용료는 개정된 장비사용료의 산정기준에 따라 [별표1],[별표2]를 적용한다.<신설 2016.04.29.><개정 2023.04.10.>

- ② 센터 장비를 사용하여 생산된 판매목적의 제품은 “식품위생법”의 의거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센터 내 품질검사 항목과 검사료는 [별표3]와 같이 산정한다.<신설 2017.11.06.><개정 2023.04.10.>

제8조의1(신규 도입장비의 사용료 산정) ① 센터장은 『진흥원 운영규정집』 제21조 제1항에 의거 산정하여 징수한다.<신설 2016.04.29.>

- ② 삭제 <2017.11.06.>

제8조의2(생산장비별 사용시간의 산정 기준) ① 최초 장비사용 시작 시간은 신청한 당일에 사용자의 입실 시간으로 정한다. 다만, 센터전문요원이 직접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사용 장비 사전테스트 등의 작업 준비 시작 시간으로 한다.<제정 2013.1.17>

- ② 최종 장비사용 종료 시간은 사용 장비와 가공실의 청소 및 정리정돈 완료 후 사용자 또는 센터전문요원의 퇴실시간과 사용자가 제조한 제품의 가공이 완료되는 시간 중 가장 늦게 끝나는 시간으로 정한다. 다만, 센터전문요원이 직접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제조한 제품의 가공이 완료되는 시간으로 한다.<제정 2013.1.17>

- ③ 센터 수산가공동에서 실 사용한 개별 생산 장비에 대한 사용시간의 적용은 장비사용 개시일전에 신청하여 당일에 실제 사용한 전체 장비에 대해 최초 시작 시간부터 최종 종료 시간까지 동일한 사용시간을 적용한다. 다만, 공기조화기, 유틸리티 설비, 냉장실, 냉동실에 대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별표 5]과 같다.<제정 2013.1.17>

- ④ 센터 해양바이오동에서 실 사용한 개별 생산 장비에 대한 사용시간의 적용은 [별표 6]과 같다.<제정 2013.1.17>

- ⑤ 삭제 <2013.1.17.>

- ⑥ 사용자의 장비사용이 18시 이후로 지연 또는 연장되거나,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하여 산정한다.<신설 2017.11.06><개정 2023.04.10.>

1. 18시 이후 발생한 장비사용시간 2배 적용
2. 주말 또는 공휴일의 장비사용시간 2배 적용
3. 주말 또는 공휴일에 18시 이후 발생한 장비사용시간 4배 적용

제8조의3(생산장비별 인건비 산정시간의 기준) ①센터전문요원이 직접 장비를 운영 할 경우 최초 장비사용 시작 시간부터 최종 종료 시간까지의 인건비를 산정한다. 다만, 특수하게 운영되는 장비의 인건비 산정시간은 [별표 7]과 같다.<제정 2013.1.17>

②사용자가 직접 장비를 운영 할 경우에 사전 장비 가동 및 유틸리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최대 1일 2시간을 적용한다. 다만, 1시간 이하를 사용한 경우에는 1시간을 적용하며, 사용자가 18시 이후로 지연 또는 연장할 경우 1시간씩 산정하고,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한다.<제정 2013.1.17><개정 2023.04.10.>

③사용자의 장비사용이 18시 이후로 지연 또는 연장되거나,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할증하여 산정한다.<제정 2013.1.17><개정 2023.04.10.>

1. 18시 이후 발생한 인건비는 2배 적용
2. 주말 또는 공휴일의 인건비는 2배 적용
3. 주말 또는 공휴일에 18시 이후 발생한 인건비는 4배 적용

④삭제 <2013.1.17>

⑤사용자가 장비사용 개시일전까지 생산인력을 자체 조달하지 못해 센터에 생산인력지원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센터전문요원의 장비사용료에 산정된 인건비를 적용할 수 있다.<제정 2013.1.17><개정 2023.04.10.>

제8조의4(생산장비별 수도비 산정 기준) 생산장비 별 수도비의 산정 기준은 [별표 8]과 같다.<제정 2013.1.17>

제9조(장비사용료의 감면) 센터장은 제8조 및 제8조의1의 장비 사용료를 징수할 때 [별표 4]의 할인율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할 수 있다.<제정 2011.6.15, 2012.3.15., 2013.9.3., 2016.03.17>

제10조(사용자에 대한 제재조치) ①센터장은 사용자가 장비사용료를 미납한 경우에 미납한 장비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공동 생산장비 사용신청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제정 2012.3.15.>

②장비사용료의 미납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미납일 적용 기준일은 장비 사용 신청일자로 한다. 다만, 장비 사용 예정일 이전에 미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장비사용에 제한을 할 수 있다.<제정 2013.1.17.>

③센터장은 사용자가 시설 또는 기계장비를 파손하고 멸실시킬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신청 승인을 거부 할 수 있다.<신설 2017.11.06.>

④센터장은 사용자가 장비사용신청 후 천재지변 외 개인적인 사유로 3회 이상 취소 이력이 있는 경우 공공질서를 위하여 사용신청 승인을 거부 할 수 있다.<신설 2017.11.06.>

⑤센터장은 사용자의 시설·장비·비품 사용 후 위생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신청 승인을 거부 할 수 있다.<신설 2017.11.06.>

⑥그 밖의 센터 공동 시설·장비의 관리,운용상 장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사용신청 승인을 거부 할 수 있다.<신설 2017.11.06.>

⑦[별지6]장비사용에 관한 사용자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장비사용에 제한을 할 수 있다.<신설 2023.04.10.>

제11조(장비사용료 변경) ①장비사용료는 인건비, 유틸리티비, 장비유지비, 전력비 등의 합당한 변경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변동에 관계없이 통계청 고시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경 분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제정 2011.6.15.><개정 2023.04.10.>

②장비사용료는 시설·장비의 투입된 간접비(유틸리티, 유지보수비, 시설운영비)등 실비용을 차년도에 반영하여 변경·산정할 수 있다.<신설 2023.04.10.>

제12조(장비사용료 청구) ①장비사용료의 청구는 장비사용이 끝난 날부터(검수가 필요할 경우 검수기간 포함)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신설 2023.04.10.>

②장비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따로 계약으로 납부기한을 조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는 최대 4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23.04.10.>

③ 사용자는 장비사용료를 센터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3.04.10.>

④ 센터는 사용자가 장비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고,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23.04.10.>

⑤ 제4항의 연체료는 추가납부기한까지 연체일수를 계산하여 지연일수 1일에 미납금액의 500분의 1을 가산한다.<신설 2023.04.10.>

제13조(장기연체자 조치) ①센터장은 사용자가 장비사용료를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경우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 등 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3.04.10.>

②장기연체자의 경우에는 재단이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체된 금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04.10.>

제14조(이의신청) ①센터에서 산정한 장비사용료에 대한 이의 신청은 청구일 또는 사용자가 확인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정 2013.1.17>

②센터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후 사용자에게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 처리 기간 중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한 사용자의 장비 사용 및 완제품의 반출을 제한 할 수 있다. <제정 2013.1.17.>

장비사용 신청인은 센터 규정에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와 같이 이행하고 확약함을 동의합니다.

2023 년 월 일

기 업 명 : _____ 성 명 : _____ (인)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장 귀하

[별표 1] <제정 2011.6.15, 2012.3.15, 2013.1.17, 2016.04.29.><개정 2023.04.10.>

○ 수산가공동 장비사용료 (1시간당)

No	장비명	장비 사용료	No	장비명	장비 사용료
1	공관공급기	2,305	33	밴드실러	676
2	공관세척기	2,355	34	진공저온추출기	2,093
3	육힐컨베이어	1,679	35	냉풍제습건조기	2,151
4	주액기_CAN	2,639	36	전기오븐	2,508
5	탈기함	2,510	37	복식진공포장기	1,484
6	권체기_ROUND	7,432	38	X-ray이물검출기	5,981
7	권체기_SQUARE	9,419	39	수축필름포장기	2,219
8	실관공급컨베이어	923	40	자동날인기	362
9	실관세척조	159	41	전복세척기	1,137
10	벨트컨베이어	272	42	계량충진기	894
11	진공펌프	1,038	43	역회전과립기	2,060
12	공병세척기	2,643	44	가스회전식국솥	221
13	주액기_BOTTLE	2,513	45	습식분쇄기	802
14	캡핑기	1,163	46	로타리자동컵실러포장기	5,998
15	로타리자동파우치포장기	9,101	47	싱싱캔시머기	1,106
16	멸균기	12,722	48	수평형밴드실러	767
17	교반탱크	1,421	49	혼합기	629
18	이송탱크	427	50	훈연기	814
19	Filler_pump_살균장치	2,290	51	콜드체인기	2,160
20	스팀솔_교반_1	855	52	고점도충진기	1,896
21	스팀솔_교반_2	855	53	자동열성형진공포장기	11,547
22	스팀솔_조미	646	54	필렛기	2,645
23	부대설비_전처리	1,159	55	두절기	1,764
24	날인기_유통기한	1,755	56	할복기	2,175
25	에어컴프레샤	2,256	57	탈피기	1,434
26	스팀보일러	3,912	58	절단기	1,092
27	냉장실	1,276	59	칼집기	279
28	냉동실	2,540	60	다이서	2,101
29	급속냉동실	6,405			
30	공기조화기	18,477			
31	유틸리티설비	4,703			
32	진공포장기	812			

[별표 2] <신설 2012.3.15, 2013.1.17, 2016.04.29.><개정 2023.04.10.>

○ 해양바이오동 장비사용료 (1시간당)

No	장비명	장비 사용료	No	장비명	장비 사용료
1	습식파쇄기	4,057	16	RO_SYSTEM	9,290
2	세척기	925	17	액상포장기	2,426
3	3KL_추출기	15,312	18	분말포장기	2,225
4	200L_추출기	9,904	19	계량총진기	732
5	UF_SYSTEM	12,847	20	필터프레스	1,339
6	1차_농축기	12,509	21	열풍건조기	6,488
7	2차_농축기	7,915	22	건식분쇄기_소형	957
8	저온진공건조기	9,408	23	초미립자분쇄기	2,870
9	동결건조기	18,597	24	로타리마스크팩자동충전기	3,784
10	건식분쇄기	10,800	25	서보충전기	4,491
11	CIP설비	3,937	26	공기조화기	25,323
12	분말총진기	2,793	27	중량선별기(신규)	1,682
13	스팀보일러	4,063	28	튜브충전포장기(신규)	8,534
14	냉각탑	2,481	29	스킨로션총진기(신규)	6,628
15	에어컴프레서	5,975	30	크림총진기(신규)	6,578

○ 연구장비 사용료(1시간당)

No	장비명	장비 사용료	No	장비명	장비 사용료
1	고압멸균기	6,930	5	액체크로마토그래피(신규)	59,056
2	초고속진공저온추출농축기	13,192	6	자외선차단지수측정기(신규)	29,532
3	극초저온냉동고	11,505			
4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분취 시스템	26,964			

[참고사항(공통)]

- * 사용료는 부가세 별도
- * 장비이용료 = (이용단가×사용량(1hr))+직접비+간접비
- * 상기 사용료는 1시간 사용 기준임.
- * 변동비(연료비, 수도비, 재료비 등),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는 별도 산정함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미생물 검사수수료 산정

1. 타 기관의 미생물 검사수수료 현황

(단위 : 원)

No.	시험항목	한국기능성식품연구원	동명생명과학원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1	대장균군	25,000	23,000	24,000
2	대장균	25,000	24,000	25,000
3	일반세균수	17,000	17,000	21,000
4	장염비브리오	28,000	35,000	32,000
5	살모넬라	23,000	26,000	30,000
6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32,000	37,000	45,000
7	황색포도상구균	33,000	32,000	72,000
8	바실러스 세레우스	97,000	28,000	41,000

2.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미생물 검사 수수료 산정

(단위 : 원)

No.	시험항목	평균	평균의 80%	비고
1	대장균군	24,000	19,200	
2	대장균	24,667	19,733	
3	일반세균수	18,333	14,667	
4	장염 비브리오	31,667	25,333	
5	살모넬라	26,333	21,067	
6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38,000	30,400	
7	황색포도상구균	45,667	36,533	
8	바실러스 세레우스	55,333	44,267	

3. 미생물검사 수수료 산정 사유

우리 연구센터는 공인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수 없기 때문에 타 기관 검사 수수료의 80%로 산정하고자 함.

※ 미생물검사에 따른 무작위로 채취한 시료를 준비하여 검사 의뢰하여야 함.

장비사용료 산정 및 할인기준(제7조 2항 관련)

1. 장비사용료 산정기준

$$\text{장비사용료} = (\text{이용단가} \times \text{사용량}) + \text{직접비} + \text{간접비}$$

① 이용단가는 장비 특성에 따라 시간당, 개당, 건당 기준에 따라 정한다. 시간당 이용단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한다.

$$[\text{시간당 이용단가} = \text{장비취득가액} \times 0.06^* / \text{연간 표준활용시간}^{**}]$$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6%로 산정

**연간 표준 활용시간은 전년도 실제가동 활용시간을 적용하며, 신규도입장비와 같이 적용이 어려운 경우 1,000시간으로 함

② 사용량은 실제 이용한 양(시간, 개, 건 등)으로 한다.

③ 직접비는 장비운동을 위해 직접 투입된 시약재료비, 유지보수비, 장비운영인력 인건비***, 유류비**** 등 직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해당 인력의 총 인건비

**** 장비운영 시 직접 사용되는 연료비, 가스비, 전기비, 수도비 등의 비용

④ 간접비는 유틸리티 및 부대시설운영비 등 간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장비사용료를 산정할 때 상기 산정기준을 적용하되, 장비를 구축한 정부부처나 장비활용사업 등 부처의 별도 지침이나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만, 장비운영특성 및 특별 공정기술이 필요할 경우 센터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장비사용료 할인기준

할인대상	할인율	비 고
도내 투자기업	30%	재단과 투자협약 체결하고 실현한 경우
입주(졸업)기업	20%	본사/지사/사업자등록지가 재단인 경우
도내기업·기관	15%	본사/사업자등록이 전라남도 소재인 경우
업무협약체결 기업·기관	10%	

※ 장비 할인율은 사용료 단가 산출기준 중 실소요경비에 해당하는 직접비/간접비를 제외한 이용단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수산가공동 장비별 사용시간 산정기준(제8조2 관련)

번호	장비명	산정기준	비고
1	공기조화기	센터전문요원의 준비 시간부터 ~ 샘플·가공이 완료되는 시간 중 가장 늦게 끝나는 시간 및 퇴실시간으로 정한다.	
2	유틸리티설비	사용자가 아래 “*”의 장비 중 하나만을 사용할 경우에는 ‘유틸리티설비’ 항목은 산정에서 제외함. * 냉장실, 냉동실, 급속냉동실 * 진공포장기(챔버식), 밴드필러, 수축필름포장기, 날인기 등을 1시간 이내로 사용한 경우	
3	냉장실	① 24시간(1일)을 기준으로 실 사용 공간 면적에 따른 시간을 산정한다. * 1/8이하: 3시간, 1/6이하: 4시간, 1/4이하: 6시간, 1/2이하: 12시간, 1/2이상은 24시간을 적용함. ② 보관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길 수 없음. ③ 3개월 경과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센터에서 폐기 처리 후 장비사용료에 실 폐기처리비용을 부과함.	
4	냉동실	① 24시간(1일)을 기준으로 실 사용 공간 면적에 따른 시간을 산정한다. * 1/8이하: 3시간, 1/6이하: 4시간, 1/4이하: 6시간, 1/2이하: 12시간, 1/2이상은 24시간을 적용함. ② 보관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길 수 없음. ③ 3개월 경과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은 센터에서 폐기 처리 후 장비사용료에 실 폐기처리비용을 부과함.	

해양바이오동 장비별 사용시간 산정기준(제5조2 관련)

번호	장비명	산정기준	비고
1	습식파쇄기	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2	세척기	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3	3KL_추출기	원료 또는 정제수 투입 준비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4	200L_추출기	원료 또는 정제수 투입 준비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5	UF_SYSTEM	원료 투입(A-12-1)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6	1차_농축기	추출액 이송 또는 탱크(A-12-2) 투입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7	2차_농축기	1차 농축액 이송 또는 탱크(B-02) 투입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8	저온진공건조기	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9	동결건조기	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10	건식분쇄기	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11	CIP설비	1회당 2시간 산정	
12	분말충진기	원료(분말) 투입 준비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13	스팀보일러	실 가동시간(사용 시작 ~ 사용 종료)	
14	냉각탑	실 가동시간(사용 시작 ~ 사용 종료)	
15	에어컴프레서	실 가동시간(사용 시작 ~ 사용 종료)	
16	RO_SYSTEM	1회당 2시간 산정	
17	액상포장기	원료(액상) 투입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18	분말포장기	원료(분말) 투입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19	계량충진기	실 가동시간(사용 시작 ~ 사용 종료)	
20	필터프레스	원료(액상) 투입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21	열풍건조기	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22	공기조화기	센터전문요원의 준비 시간부터 ~ 샘플·가공이 완료되는 시간 중 가장 늦게 끝나는 시간 및 퇴실시간으로 정한다.	

해양바이오동 장비별 사용시간 산정기준(제5조2 관련)

번호	장비명	산정기준	비고
23	건식분쇄기_소형	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24	초미립자분쇄기	원료 투입 준비 시작 시간 ~ 세척·청소 완료 시간	
25	로타리마스크팩 자동충전기	센터전문요원의 준비 시간부터 ~ 생산 세척이 완료되는 시간	
26	서보충전기 (고점도 펌프 포함)	센터전문요원의 준비 시간부터 ~ 생산 세척이 완료되는 시간	

특수하게 운영되는 장비의 인건비 산정시간 기준(제5조3 관련)

번호	장비명	산정기준	비고
1	진공저온추출기	3시간(단 원료 해동, 세척 공정이 있을 경우에 3시간 적용)	수산가공동
2	냉장실	해당사항 없음	수산가공동
3	냉동실	해당사항 없음	수산가공동
4	급속냉동실	해당사항 없음	수산가공동
5	냉풍제습건조기	1. 4시간(센터전문인력이 투입, 회수, 세척 했을 경우) 2. 2시간(사용자가 투입, 회수만 할 경우) 3. 없음(사용자가 투입, 회수, 세척 했을 경우)	수산가공동
6	X-ray이물검출기	1시간(외 포장 작업 시에만 적용함, 센터전문요원은 장비 설정만 지원함)	수산가공동
7	날인기_유통기한	1시간(외 포장 작업 시에만 적용함, 센터전문요원은 장비 설정만 지원함)	수산가공동
8	수축필름포장기	1시간(외 포장 작업 시에만 적용함, 센터전문요원은 장비 설정만 지원함)	수산가공동
9	습식파쇄기	1. 실 사용시간(센터전문인력이 직접 운영 할 경우) 2. 1시간(사용자가 직접 운영 할 경우)	해양바이오동
10	세척기	1. 실 사용시간(센터전문인력이 직접 운영 할 경우) 2. 1시간(사용자가 직접 운영 할 경우)	해양바이오동
11	3KL_추출기	4시간	해양바이오동

12	200L_추출기	3시간	해양바이오동
13	동결건조기	1. 3시간(센터전문요원이 운영하고 세척 할 경우) 2. 2시간(사용자가 직접 투입하고 회수 할 경우)	해양바이오동
14	저온진공건조기	3시간	해양바이오동
15	열풍건조기	1. 3시간(센터전문요원이 운영하고 세척 할 경우) 2. 2시간(사용자가 직접 투입하고 회수 할 경우)	해양바이오동
16	초미립자분쇄기	1. 4시간(센터전문인력이 투입, 회수, 세척 했을 경우) 2. 2시간(사용자가 투입, 회수만 할 경우) 3. 없음(사용자가 투입, 회수, 세척 했을 경우)	해양바이오동

[별표 8] <신설 2013.1.17><개정 2023.04.10.>

장비별 수도비 산정기준(제5조4 관련)

번호	장비명	산정기준	비고
1	멸균기	냉각시간(분) × 0.155톤(분당 사용량) × 1,294원(톤당 요금)	수산가공동
2	3KL_추출기	2톤(정제수 투입량) × 3배(RO, 냉각수 사용량) × 1,294원(톤당 요금)	해양바이오동
3	200L_추출기	0.5톤(정제수 투입량) × 3배(RO, 냉각수 사용량) × 1,294원(톤당 요금)	해양바이오동
4	CIP설비	3톤(상수도 투입량) × 1,294원(톤당 요금)	해양바이오동
5	로타리마스크팩 자동충전기	0.1톤(상수도 투입량) × 1,294원(톤당 요금)	해양바이오동
6	서보충전기 (고점도 펌프 포함)	1톤(상수도 투입량) × 1,294원(톤당 요금)	해양바이오동